

「구미시 아동·청소년 부모 빗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신용하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아동·청소년의 부모 빗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,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대상과 범위, 지원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7조)
- 비밀준수 및 정보제공·홍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
 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
 - 「민법」 제9조, 제12조, 제143조의2, 제928조, 제958조의14, 제1019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아동·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,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이 조례는 아동·청소년에게 부모빚이 대물리 되지 않도록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등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 제1항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3항의 ‘청소년’과 ‘보호자’의 개념을 넓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, 상속포기 등 까다롭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.
- 「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,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